

배전반 발주 관련 수의계약 단체선정 공고

1. 목적 : 배전반 수의계약 관련 사전에 적격자 및 순위를 정하여 계약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배전반 발주 계획

가. 배정분야 : 삼척 및 인천기지 건설 관련

나. 발주분야 : 저압배전반(플랜트), 고압배전반(일반건물) 대상

다. 발주규모 : 건당 1.5 ~ 3억원

라. 배정시기 : '14. 6월 ~ 순위별 1건 배정시까지

* 향후 3년간 발주예상 건수 : '14년 2건, '15년 3건, '16년 2건

3. 수의계약 요청서 제출자격

가. 제출자격 : 아래 “(1)” 및 “(2)”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단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 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단체 및 동 시행령 부칙 22282호(‘10.7.21) 제7조2항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단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4호의 수의계약 대상 단체>

-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단체
- 국가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단체
-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단체

<부칙 22282호(‘10.7.21) 제7조2항의 수의계약 대상 단체>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2015.12.31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시행)

(2)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3년간 공공기관 계약건당 배전반 계약금액(부가세 포함) 1억5천만원 이상인 계약실적이 있는 단체

나. 결격사유

- (1) 요청서 제출일 현재 국가 (중앙·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당공사의 경우 불량업자 포함)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자
- (2) 요청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 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신청자격을 부여함
- (3)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2)”를 준용함

4. 수의계약 단체 선정 방법

가. 수의계약 참여 신청서류 접수

- 제출서류 : 수의계약요청서 양식(첨부1) 및 심사용 서류목록 (첨부2)
 - *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만 인정
 - *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 접수처 : 한국가스공사 자재계약팀
- 접수마감일 : '14. 4. 29(화)

나. 서류심사 후 추첨 참여 적격자 선정 및 통보

- 수의계약 참여 신청서류를 제출한 단체 중 심사하여 확정 및 통보 ('14년 5월 초)
- 적격자로 선발된 단체중 추첨을 통하여 순위 결정
 - 추첨하여 1위부터 최하위 순위까지 결정
 - 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직접 추첨에 참여

※ 추첨일 등 관련 세부내용은 적격자 심사결과와 함께 개별(이메일) 통지

5. 후속 절차

가. 발주물량 배정

- 각 발주시기별 발주물량에 대하여 1순위 단체부터 순서대로 발주물량 배정
- 순위별 배정 완료(단체별 각 1건) 후 신규 진입단체에 추가 추첨 참여기회 제공

나. 수의계약 추진

- 배정업체와 수의시담 및 낙찰
 - ※ 수의시담 유찰시(2회) 해당 발주물량은 해당 유찰업체에 1회 배정으로 간주되고 차순위자에게 기회부여
- 낙찰자와 수의계약 체결
 - 계약체결시 국가계약법 및 수의계약 적격자 선정시에 요구되는 자격사항을 유지해야 계약체결 가능하며
 -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사유시(부도, 파산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체결 보류

6. 기타사항

- 가. 수의계약 요청자는 요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요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요청자에게 있음
- 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요청하거나 제출서류에 위조, 변조의 사실이 있을 경우 제출취소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음
- 다. 요청서 제출 관련 문의 : 총무관리처 자재계약팀 차장 최혜경
(Tel : 031-710-0418)

2014. 4. 1

한 국 가 스 공 사

(첨부 2)

제출서류 목록

1. 수의계약요청서
2. 단체설립허가증 또는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지정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5. 법인정관
(단체설립 인·허가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인·허가된 정관)
6. 당해 물량배정을 신청한 물품이 명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승인서
 - 가. 관보에 게재된 수익사업 승인서
 - 나. 당해 단체설립허가기관이 발행한 수익사업승인서
 - 다. 당해 단체설립허가기관이 승인한 정관(승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이 인정한 정관)
7.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발급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단체 및 물품을 고시 또는 공고한 경우에는 자격충족 확인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8. 중소기업청장(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당해 단체설립허가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9.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발급한 제조·납품실적증명원
 - ※ 접수마감일 기준 3년간 배전반 납품실적증명서 1건 이상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금액(부가세포함) 배전반 1억5천만원 이상인 실적만 인정
 - ※ 1억5천만원 이상 실적에 대한 총괄표 작성(단체명 기록후 날인 제출)
10. 입찰참가자격등록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확인으로 같음)
11. 공장등록증 및 생산시설·장비보유현황(공장 및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 공장보유 여부는 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공장등록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
12. 수의계약 자격확인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필요시 추가)
 -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제출